

##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

소관부서 : 공학교육혁신센터 1527~8

### 제1조 (목적)

이 세칙은 한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68조에 근거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프로그램)

전산전자공학부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프로그램(이하 "인증프로그램"이라 한다)으로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과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. (개정 2010. 12. 28)

### 제3조 (프로그램 운영)

- ① 전산전자공학부는 각 전공 내에서 인증프로그램과 복수전공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0. 12. 28)
- ② 인증프로그램과 복수전공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제증명서 상의 전공 명칭은 '별표 1'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.(개정 2010. 12. 28)
- ③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PD(Program Director)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학교육인증제도 프로그램위원회를 각 프로그램 내에 둔다.(개정 2009.8.17)
- ④ 각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별 내규를 각 프로그램별로 정한다.(개정 2012.11.7)
- ⑤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, 각 인증프로그램은 MSC(수학 및 기초과학 등) 및 전문교양교과목 관련 제도 및 운영을 공학기초교양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10.12.28)

### 제4조 (인증대상 및 참여)

- ① 공학교육인증제도는 인증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(개정 2009. 8. 17)
- ② 공학교육인증제도 참여 신청은 07학번 이후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06학번 이전 학생은 2011년 2월 이후 졸업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.(개정 2009. 8. 17)
- ③ 등록학기가 1학년 1학기인 학생은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로 신청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의 전입절차를 따른다.

### 제5조 (졸업)

- ① 인증프로그램에 소속된 자는 학칙 제 47조 2의 졸업요건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공학교육인증 교과목(전문교양, MSC(수학 및 기초과학 등), 전공)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각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.
- ② 각 프로그램위원회는 제1항 이외에 별도의 인증이수요건을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제6조 (전입)

- ① 전입(재입학, 편입학, 복학, 전과)생이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, 공학교육인증 과정 참여/포기 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를 PD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 8. 17)
- ② 이수허가를 받은 전입생은 제5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공학인증에 따른 학사 학위를 받을

수 있다.

③ 전입생이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인증 교과목 인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각 인증프로그램별 내규에서 정한다.(개정 2012.11.7)

### 제7조 (인증포기)

① (삭제 2011. 10. 31)

② 인증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공학교육인증 과정 참여/포기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4학년 진학 전까지(3학년 2학기 중강 1개월 전)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(소속 학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학칙 제 21 조 2에 따라야 한다.)

③ (삭제 2011. 10. 31)

### 제8조 (교육과정)

① 전문교양,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목의 학습성과는 모든 인증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지정하고 이 학습성과의 설정과 변경은 공학기초교양위원회에서 정한다.(개정 2010. 12. 28)

③ 전공 교과목의 선수과목 체계는 각 인증프로그램별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하고, MSC 및 전문교양 교과목의 선수과목 체계는 공학기초교양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③ 2009년 2학기부터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선수과목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수과목 수강 가능 여부를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은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제9조(기타)

PD회의, 공학기초교양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에서 정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일전 공학교육인증에 참여를 신청한 학생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.

③ (제증명 표기의 적용에 관한 특례) 별표 1과 같이 제증명을 표기함에 있어 학위기 및 졸업증명서는 2011년 2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하고,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이 세칙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'06학번 이전 학생 중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2011년 2월 전에 졸업 또는 재적할 때에는 별표와 달리 표기 할 수 있다.